

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0. 6. 21(월)
산 업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0. 6. 4
- 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10. 6. 4
- 라. 상정일자 : 2010. 6. 15(제1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)
 - 제안설명 : 상수도사업본부장
 - 검토보고 : 산업전문위원 김복기
 - 질의 및 토론
 -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수도법」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임 근거 조항이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「수도법」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.(안 제1조, 제2조)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정비함.(안 제2조제2호, 제3조제3항, 제5조제1항,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

○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

- 상위법인 「수도법」이 개정되어 우리시의 수도급수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, 그밖에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질 의 >

○ 김성숙 의원

- 안 제3조제3항제3호의 소비자보호단체·환경단체·여성단체 등의 장으로에서 소비자 “보호”를 넣은 이유는?

< 답 변 >

○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복

- 소비자보호단체가 정식 명칭인줄 알고 있었습니다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없음

나. 반 대 : 한도섭, 박희경, 배영민, 김성숙, 김을태 위원

6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(재석위원 전원 찬성 : 5명)

7. 기타 특이사항

○ “없음”

- 붙임 : 1. 수정안 1부.
2.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.
 3. 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 4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3항제3호 중 “소비자보호단체”를 “소비자단체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수도법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수도법」 제30조----- ----- ----- -----.	제1조(목적) (개정안과 같음)
제2조(기능) 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 1. 「수도법」 제1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2. 기타 수질향상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제2조(기능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「수도법」 제30조제1항----- ----- 2. 그 밖에 ----- ----- ----- -----	제2조(기능) (개정안과 같음)
제3조(구성) ① ~ ② (생략)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1. ~ 2. (생략) 3. 기타 소비자보호단체·환경단체·여성단체 등의 장 등	제3조(구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각 호 ----- -----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그 밖에 소비자보호단체----- -----	제3조(구성) ① ~ ② (개정안과 같음) ③ (개정안과 같음) 1. ~ 2. (개정안과 같음) 3.-----소비자단체----- -----
제5조(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, 위원회를 대표한다. ② (생략)	제5조(직무) ① ----- -----총괄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	제5조(직무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(개정안과 같음)
제7조(회의안건 배부)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 까지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7조(회의안건 배부) ----- 부치는 ----- ----- ----- ----- 그 밖에 ----- ----- -----.	제7조(회의안건 배부) (개정안과 같음)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수도법」 제19조의2의 규정”을 “「수도법」 제30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수도법」 제19조의2제1항”을 “「수도법」 제30조 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소비자보호단체”를 “소비자단체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통할”을 “총괄”로 한다.

제7조 본문 중 “부의할”을 “부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수도법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수도법」 제30조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(기능) 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「수도법」 제19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</p> <p>2. 기타 수질향상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	<p>제2조(기능) ----- ----- -----</p> <p>1. 「수도법」 제30조제1항----- -----</p> <p>2. 그 밖에 ----- ----- -----</p>
<p>제3조(구성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기타 소비자보호단체·환경단체·여성단체 등의 장 등</p>	<p>제3조(구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각 호 ----- -----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그 밖에 소비자단체 ----- -----</p>
<p>제5조(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, 위원회를 대표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조(직무) ① ----- ----- 총괄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회의안건 배부)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7조(회의안건 배부) ----- -- 부치는 ----- ----- ----- 그 밖에 ----- ----- -----</p>